2017학년도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I 인재상

첨단을 추구하는 글로벌 과학인재 양성

표 모집 인원

남녀 구분 없이 모집 정원 80명(학급당 20명, 4학급)과 정원 외 3명

구분		모집 대상	모집 인원	비고
	정원 내	일반 대상자	64명	사회통합 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20%를 선발하며, 사회
자기주도	(80명) _人 사기주도 학습전형	사회통합 대상자	16명	통합 대상자 중 50%는 기회균등 대상자로 우선 선발
학습전형		보훈처지정 교육지원 대상자	2명	모집 정원의 3% 이내
	(3명)	특례입학 대상자	1명	모집 정원의 2% 이내

- ※ 지원자는 모집 대상 중 한 가지에만 지원할 수 있음
- ※ 특례입학 대상자의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자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Ⅲ 지원 자격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과학·수학 분야에 탁월한 재능과 높은 열정, 인성과 잠재력, 창의성을 갖추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구분	지원 자격
정 원 내	일반 대상자	1)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상급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하여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 가족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인천광역시 관내 및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타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④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사회통합 대상자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한 사회통합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정원 내 일반 대상자'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별표 1】
정이	보훈처지정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정원 내 일반 대상 자'의 자격을 갖춘 자
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 가족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별표 2】

- ※ '전 가족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란 '본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 본교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별표 1】사회통합 대상자 유형 및 건강보험표 적용 기준

1. 대상자

구분	지 원 자 격
기회균	1.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1)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3세아 유아교육비지원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2)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3)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학생으로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고지금액이 【201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대 상 자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자 (단, 소득8분위를 초과하지 않는 자) 가. 차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학생으로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고지금액이【201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자 2) 학교장 추천 대상자의 예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 다양성 대상자	1.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단, 소득8분위를 초과하지 않는 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자 (단, 소득8분위를 초과하지 않는 자)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에 따른 아동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마.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용유 관내 중학교 중 졸업 학생수가 50명 이내인 학교에서 2학년 3월 1일부터 원서 접수일까지 계속 재학 중인 자 사. 소년·소녀 가정의 자녀,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아.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자.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의 자녀 차. 장애인(1~3급)의 자녀 카.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의 자녀 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세자녀 이상)

2. 2017학년도 사회통합 대상자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가. 차상위계층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학생으로 최근 3개월(2016년 5~7월)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의 평균 고지금액이 아래의 표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학생

71그의스	ᇫᄃᄁᄌ(의)	건강5	보험료 본인부담	ш¬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비고
1인	812,000	25,700	4,388	27,13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383,000	42,343	18,495	42,816	n
3인	1,790,000	55,080	35,715	55,121	n
4인	2,196,000	67,238	56,336	67,441	n
5인	2,602,000	80,113	79,010	81,149	n
6인	3,008,000	92,354	96,689	93,558	n
7인	3,414,000	105,039	114,226	106,359	n
8인	3,821,000	118,466	132,333	119,900	n
9인	4,227,000	129,699	145,834	131,616	"
10인	4,633,000	143,510	160,483	145,527	n

나. 차차상위계층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학생으로 최근 3개월(2016년 5~7월)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의 평균 고지금액이 아래의 표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학생

고그이스	A E 71.5/91)	건강보	보험료 본인부담	ul ¬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비고
1인	975,000	30,590	7,668	30,60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n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99	n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n
8인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n
9인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n
10인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

다. 201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 원)

분위구분(경계값)	연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P10)	18,389,274	1,532,440	47,318	25,333	47,840
2분위(P20)	27,379,938	2,281,662	70,433	62,651	71,129
3분위(P30)	34,880,073	2,906,673	89,118	90,819	90,209
4분위(P40)	41,247,117	3,437,260	106,359	115,923	107,283
5분위(P50)	47,506,833	3,958,903	121,575	136,112	122,806
6분위(P60)	54,117,153	4,509,763	139,418	156,136	141,452
7분위(P70)	61,899,912	5,158,326	158,610	177,161	161,332
8분위(P80)	72,211,776	6,017,648	184,638	204,479	188,050
9분위(P90)	89,678,127	7,473,177	234,118	254,736	242,453

[별표 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유형

1. 대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4호 해당자

구 분	지 원 자 격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전학 또는 편입 학하여 졸업한	0 -0 -2 2 1 1 1 1 2 1 2 7 -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자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 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신 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 (제4호)	제97조제1항의 기이 있다고 인정을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받은 자	

2. 세부 사항

가. 고등학교 특례 입학 시 외국 거주 및 재학 기간

구 분	거주 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및 체류 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 기간 동시 적용

- ※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한 경우
- 단, 재학 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고입 특례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 중 일부를 이수하여야 함(해당 과정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위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신입학한 경우는 대상자가 아님

나.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 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 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체류 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 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다. 특례입학 허용 기한

구 분	허용 기한
외국소재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포함)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3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Ⅳ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인터넷		
		■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을 학교장 직인 날인하여 방문 제출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의 탈모 상반신 칼라 사진을 업로드, 수정 금지	0	0	
	공통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표) (고입용) 1부 - 단면 출력 후 맨 앞장 우측 하단에 원본 대조필(교감 또는 담임교사)하 고, 각 장마다 학교장 직인으로 간인 후 방문 제출 -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외하고 성취도와 수강자수 만을 포함하여 출력		0	
		■ 자기소개서 1부 - 본교 온라인 접수사이트에 지원자가 직접 입력	0		
		■수학 또는 과학교사 추천서 1부 - 본교 온라인 접수사이트에 해당교사가 직접 입력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자 제출 서류' 참조	0		
	사회통합 대상자	■ 사회통합 대상자의 제출 서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하여 추후 공지함		0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확인서 1부 (본교 소정 양식)		0	
	중학교 졸업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는 사실 관계 증명서 1부 - 자퇴확인서 또는 미배정확인서 등			
	타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 및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0	
해 당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0	
	법령에 의한 학력 인정 자	■주민등록등본 1부 ■학력 인정 증빙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교사추천서를 대신할 추천서 1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는 사실 관계 증명서 1부 - 자퇴확인서 또는 미배정확인서 등		0	
	보훈처지정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0	
	특례입학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특례입학대상자 지원신청서 (별도 양식) 1부 ■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 모, 학생) 1부 ■ 정부의 초정 또는 추천 관련서류(해당자) 1부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해당자) 1부 ■ 특례입학대상자 확인서(해당자) 1부 - 외국에서 발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0	

2.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 사항

1) 지원자가 다음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을 위반하여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경우 불이익 부과함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①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각종대회 등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②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③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예) 부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 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의 ①, ②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전형 단계의 최하등급 처리, ③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최저 등급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단계 이상 강등처리, 최저 등급자의 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최하등급으로 처리함
- 2) 추천 교사가 다음의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 영역]을 포함하여 교사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중학교에 추천서 재작성 통보 <mark>(해당 중학교에서 불응하는 경우 당해 학생은 전형 대상</mark> 에서 배제)

【교사추천서 작성시 배제 영역】

-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각종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개인 정보 관련 사항 등
- 학생의 교과 성적,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등
-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 3) 학교생활기록부표(고입용)는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외하고 성취도와 수강자수 만을 포함하여 단면으로 출력한 후 우측 하단에 원본 대조필(교감 또는 담임교사)하고, 각 장마다 학교장 직인으로 간인하여 제출해야 함
- 4)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표(고입용)의 출결상황은 2016.8.18.(목)을 기준으로 함
- 5) 방문 제출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함(우편 제출 불가)
- 6) 교사추천서는 추천 교사 이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7) 소집면접 대상자의 추가 서류로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표(고입용)는 3학년 2학기의 출결상황 (2016.11.23.(수) 기준) 및 성취도가 포함되도록 위의 3)번과 동일한 항목으로 단면 출력한 후 우 측 하단에 원본 대조필(교감 또는 담임교사)하고, 각 장마다 학교장 직인으로 간인하여 제출해야 함
- 8)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함
- 9) 학교생활기록부표(고입용)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는 A4 용지에 단면 인쇄하여야 함

V 전형 방법

1. 단계별 전형 방법

	구 분	전형 방법	전형 요소
1	방문면담 서류 평가를 통하여 모집 정원의 2.5배수 (200명) 내외 1 대상자 선발 의 방문면담 대상자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표(고입용) - 자기소개서 - 교사 추천서
단 계	소집면접 대상자 선발	서류 평가와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모집 정원의 1.5배수 (120명) 내외의 소집면접 대상자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표(고입용) - 자기소개서 - 교사 추천서 - 방문 면담
2 단 계	최종 합격자 선발	1단계 평가, 소집면접 평가, 추가 서류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 1단계 전형 요소 - 소집 면접 - 추가 서류(3학년 2학기 내 신 및 출결 등)

2. 내신 성적 반영 방법

구 분		내 용
반영 과목 및 비율		수학 50%, 과학 50%
반영 학기	1단계	1-1, 1-2, 2-1, 2-2, 3-1
	2단계	1-1, 1-2, 2-1, 2-2, 3-1, 3-2

- ※ 1단계는 입학원서 접수일로부터 최근 4개 학기의 성취도를, 2단계는 3학년 2학기 성적을 추가하여 5개 학기의 성취도를 반영함
- ※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학기는 내신 성적 반영에서 제외함
-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자는 해당 학년까지의 성적을 반영함

VI 전형 일정

구 분		시기	비고
입학 원서 및 기타서류 양식 교부		2016. 7. 01. (금) ~ 8. 24. (수)	- 본교 홈페이지
입학 원서 및 기타서류 온라인 접수		2016. 8. 19. (금) ~ 8. 23. (화)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 마감 일시 2016.8.23.(화) 22:00
서류 제출		2016. 8. 22. (월) ~ 8. 24. (수)	- 입학원서 출력물, 학교생활기록부표(고입용) - 방문 제출 - 마감 일시 2016.8.24.(수) 17:00
1단계	방문면담 대상자 발표	2016. 9. 12. (월)	- 본교 홈페이지(14:00) - 총 모집 정원의 2.5배수 내외 선발
	소집면접 대상자 발표	2016. 11. 16. (수)	- 본교 홈페이지(14:00) - 총 모집 정원의 1.5배수 내외 선발
소집면접 대상자 예비소집		2016. 11. 17. (목)	- 본교 지정장소(10:00)
소집면접		2016. 11. 19. (토)	- 본교 지정장소
추가 서류 제출		2016. 11. 24. (목) ~ 11. 25. (금)	- 3학년 2학기 성적, 출결상황 등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표(고입용) - 방문 제출 - 마감 일시 2016.11.25.(금) 17:00
2단계(최종 합격자) 발표		2016. 12. 02. (금)	-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016. 12. 05. (월) ~ 12. 08. (목)	

- ※ 원서 및 관련 서류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 ※ 모든 전형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합격자 배제 조건

- 1. 추천 교사가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 영역]을 위반하여 본교의 추천서 재작성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응한 경우
- 2. 제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3. 허위사실 기재, 서류위조, 대리 작성 등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4. 본교를 지원한 자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전기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이중으로 지원한 경우(전형 시기가 달라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없음)
- 5. 소집면접에 불참한 경우
- 6. 정신적 질환 등으로 학업 및 기숙사 단체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기타 사항

- 1. 소집면접에 참가한 지원자는 한국교육개발원(https://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온라 인 설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설문 시기와 방법은 추후 공지)
- 2. 전형료는 1단계 15,000원, 2단계 10,000원이며, 납부 방법은 1단계는 서류 제출 시, 2단계는 소집면접 대상자 예비소집 시 현금으로 납부함
- 3. 최종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또는 합격 취소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4.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
- 5. 본교 지원자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전기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본교에 최종 합격한 자는 2017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 할 수 없음
- 6.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 평가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7. 입학 후 본교 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함
- 8. 본교 합격자는 소정의 입학 전 예비교육과정에 참가하여야 함
- 9.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미래를 선도할 과학 인재 양성의 요람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94-9 (우)21342 TEL: (032)508-8260 http://ijss.icehs.kr





미래를 선도할 과학 인재 양성의 요람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94-9 (우)21342 TEL: (032)508-8260 http://ijss.icehs.kr